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09.1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년 9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0년 9월 1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이 용 근

가. 개정이유

동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동차세의 징수촉탁과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개정기준안이 시달됨으로서 우리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 및 한도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개정내용

- (1) 안 제2조제4항제4호(지급대상)에서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에 대하여 징수촉탁하도록 신설한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도록 조항을 신설

- (2) 안 제3조제1항제7호(지급기준)에서는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
- (3) 안 제3조의2(지급한도)에서는 징수촉탁에 의한 10%의 포상금에 대해서도 개인별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제7호를 삽입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 개정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동차세 세입징수촉탁 포상금 개정(안)」이 서울특별시로 이첩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른 지급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100분의 30의 징수촉탁교부금중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내용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조례의 시행일이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대하여 「지방세법」 일부 개정 시점인 2010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양양은 물론 포상금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